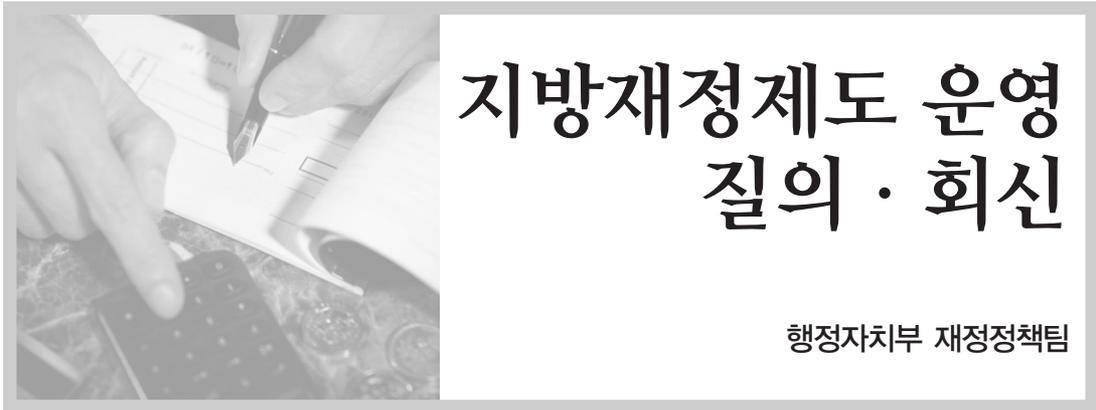


질의와 회신



I.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1.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 조정방법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 하천 준설토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사토장이 변경(당초 30km → 15km)로 변경되면서 당초 운반로가 변경되었을 때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34호「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6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각 호 규정에 의한 산식 중 협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의 사토장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보다 감소가 될 경우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는지 또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

질의와 회신

경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동 기준 제36조 제2항 2호 또는 3호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 질 의 ||

- 「○○ 도시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연구 용역」 발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BI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였으나, 입찰공고문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BI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였을 때 당초 의도는 제안요청서의 내용대로 하여야 함에도 입찰공고문상 착오 기재 되었을 때 자격기준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상호 모순되게 하여 제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종판단하여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구매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 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구매가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하수종말처리장 오염총량관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한 경우
 - 업종별 공사 예정금액 : 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7,156,200천원, 전기공사업 588,060천원
 - 설계서상의 공종 : 토목 24.7%, 건축 0.6%, 기계 66.7%, 전기 7.8%
 - 입찰참가 자격 : 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면허와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자(※공동도급 분담 이행방식 허용)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적격심사를 위한 평가대상 업종을 토목, 기계로 하지 않고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신 ■

- 시설공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적법하도록 공고를 하여야 하며,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에 있어서 평가대상 업종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27호「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별지 1)주2-2의 규정에 의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복합공정인 경우 평가하고자 하는 공사는 동일 법령상 업종(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의 경우 기초금액 기준 업종평가 비율이 20%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업(기계)뿐만 아니라 20%이상 토목 공사업이 포함된 복합공사라면 토목분야도 평가대상이 될 것이나, 설계서상 토목등록을 한자가 시공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와 회신

5. 지체상금 부과 질의

|| 질 의 ||

- “○○ 신축 통신공사”와 관련 선행공정인 건축공사(별도발주)의 공사지연으로 후속공정인 통신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당초 준공기한이 지나서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로 보아 지체상금 부과를 하여야 하는 지

|| 회 신 ||

- 행정자치부 예규 제236호 「지방자치단체를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1조 제1항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불가피 하게 후속 공정이 지연되었다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곤란한 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6. 공사 내역입찰관련 질의

|| 질 의 ||

-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내역입찰에 대하여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은 일치하나 공종 별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단가 금액이 착오기재 되었을 경우 무효입찰인지와 유효하다면 단순착오로 보아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단가 수정이 가능한 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무효는 행정자치부 예 규 제2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에 해당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되므로 계약체결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설계변경계약 체결전 시공 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미래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설치」를 계약을 체결(최초계약일: '06. 7. 20, 준공예정일: '07. 6. 10)후 '07. 3. 20일 설계변경을 발주처에 요구하고 '07. 5. 20일 발주처로부터 승인통보(선 시공)한 후 설계변경 지시를 받았으나 당사자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설계변경 내용대로 납품을 완료했을 때,
 질의 1) 설계변경 전 선시공이 가능한 지 여부와 계약기간이 지나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2) 변경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 지체상금을 부과 대상이 되는 지

■ 회 신 ■

-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3조 제1항의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이의 해당 여부는 발주처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설계변경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예규 제236호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금액, 기간)승인을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지체가 아닌 경우라면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의 연장절차 이행여부, 실정보고 승인 등에 소요된 기간이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와 회신

8. 통합감리 발주 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와 ○○감리용역을 2005년 11월부터 수행중인 바, '07년 8월부터 동일 대지 내에서 새로운 공사에 대한 감리를 별도의 공고 및 입찰절차 없이 발주청이 현장여건, 착공시기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통합감리로 발주가 가능 한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통합감리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의 경우처럼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집행계획 공고 시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경쟁입찰로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조성사업관련 2001년 3월 10일 현상공모를 통해 장기계속비로 (총 용역비 : 1,600백만원, 1단계 1,120백만원, 2단계 480백만원) 1단계 계약을 체결 ('06. 1. 18)시 총 용역비를 계약서상 부기를 하지 않고(설계서, 과업지시서 상에는 명기됨)계약이행을 완료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로 사업이 중단되어오다 최근 완료되어 2단계 사업 추진 시 당초 계약자와 2단계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규정된 바,

- 장기계속 사업의 경우 계약서 상 총 용역비를 부기함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제 192호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서 계약문서는 표준계약서 외에 설계서, 계약일반 조건 등도 계약서에 해당된다고 규정 한 바 당초 사업의 변경이 없는 한 당초 계약자와 2단계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 폐기물처리용역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용역을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폐기물량이 증가되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에 있어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행정자치부 예규 197호) 제16조의 규정에 당초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추가업무의 수행등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이 추가발생 폐기물량이 당초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새로 추가되는 물량을 계약내용의 변경 방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방법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11. 유찰된 시설위탁관리 용역의 처리방법 질의

■ 질 의 ■

- 기초금액 180,000천원인 청사 시설위탁관리 용역을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실시하여 1차 공고에 따른 개찰결과 35개 업체가 참여, 심사대상 모두 기준점수 미달로 유찰되어 재공고 결과 22개 업체가 참여, 심사대상 모두 기준점수 미달로 재 유찰된 경우 새로운 입찰로 가능한 지 여부, 재공고 후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질의의 경우처럼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의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 입찰을 할 것인지 새로운 입찰로 실시 할 것인지는 당해 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상황, 과업내용, 설계금액,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 할 사항입니다.
- 또한, 당해 사업이 원가계산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단순노무용역이라면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7984(’06.12.29)호로 기 통보한 바와 같이 최저가 입찰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12. 사회보험료 정산관련 질의

질의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와 관련 당해사업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상대 회사 소속 상근직원이 참여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개별보험료 납입확인서와 공사감독관의 확인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보험료이중청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 행정자치부 예규 제234호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공사의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에서의 사후 정산대상자는 일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직접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까지 포함되며, 상용 근로자의 경우 당해 건설공사 공사기간 대비 당해 건설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날을 계산하여 그 기간에 투입된 시기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상용직의 사회보험료 이중청구문제는 당해 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공단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된 사실을 근거로 정산 한다면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I. 접근성 및 지역제한 관련 질의모음

1. 적격심사시 접근성점수 부여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추정가격 2억 미만인 공사입찰에 따른 적격심사시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인접한 시·군에 주된사무소가 소재하고 개찰전에 인접하지 않은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을때 접근성(0.2) 점수 부여가 가능한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제227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7〉"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경쟁입찰 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하여야하며,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접근성은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현장관리 등 접근성이 용이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동 기준 제정의 기본취지인 바,
- 귀 질의의 경우처럼 당해입찰에 대한 입찰자가 입찰 공고일전에는 공사현장소재지의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였으나 계약체결 전에 인접하지 않은 시·군으로 이전하였다면 접근성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회신

2. 폐기물 처리용역 견적제출 대상제한에 관한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에 의거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계약담당자가 안내공고를 함에 있어 계약의 특성에 따라 관할 시·도지역내에 소재한 사업자(법인의 경우 지점을 포함한다)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에 의거하여 안내공고시 접근성등을 감안하여 우리 군내에 폐기물처리 공장이 소재하고 폐기물처리업 사업등록한 업체(법인의 경우 지점포함)만을 대상으로 견적입찰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위 지점의 본사와 계약체결을 이행하여도 법적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 IV-1-(2)-가-②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당해 시·군과 인접한 시·군(일부 시·군만 선택이 가능)을 포함하여 견적 제출 대상을 제한하거나 관할 시·도지역내에 소재한 사업자(법인의 경우 지점을 포함한다)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접근성등을 감안하여 군(郡)내로 견적입찰 대상을 제한할 경우 군내 소재한 사업자(법인의 경우 상법상 등기된 지점을 포함)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시 법인의 경우 지점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수의계약 공고 적정성 질의

|| 질 의 ||

- 도로개설공사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하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에 참가자격(지역제한)을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자로 하면서 단서에 강화군, 용진군을 제외하도록 공고를 한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 접근성·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현장 또는 물품·용역 등의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용역·물품의 경우 광역시에 소재한 군은 제외)이나 공사의 경우 관할 광역시의 全 自治區내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물품·용역의 경우 광역시에 소재하는 전지역(군포함)을 대상으로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소액수의계약 운영요령의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질의

【 질 의 】

- 행정자치부 예규 제187호「지방자치단체 소액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 5백만원이상인 용역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상대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접근성·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하는 안내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야 하는지

【 회 신 】

- 학술연구용역은 결과 활용의 중요성과 학문적 전문성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는 가능한 지역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은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바,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이라도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5. 소액 수의계약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 요령에 의거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물품, 용역, 기타의 경우 5백만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 질의 1) 관할 시·군 관내에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개사 또는 2개사의 견적 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질의 2) 관할 시·군 관내에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개사이상 견적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질의 3) 관할 광역시·도에 참가자격을 갖춘 없거나 1개사일 경우 관할 광역시·도와 인접 광역시·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중 공사 1천만원이상, 용역·물품·기타 5백만원 이상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견적서를 받는 경우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현장 또는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의 군 제외)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바,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또는 당해 시·군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참가범위를 넓혀 인접 시·군, 시·도,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안내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기 전에 미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파악하여 무응찰 또는 유찰로 인한 행정력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2인이상 견적시 지역제한의 범위에 관한 질의

|| 질 의 ||

-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하면 2인이상 견적 제출대상을 공사현장, 납품소재지 관할 시·군(광역시소재 군제외)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었는데, 지역실정에 따라 계약담당

자가 당해 관할 시·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한지

|| 회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소액수의계약대상은 당해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소액수의계약 이상은 접근성에서 인접 시·군·자치구도 참가가 가능하나 배점이 낮은 점이 있습니다.
- 수의계약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동 요령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 수의계약대상을 인접 시·군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참가기회를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7.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한 질의

□ 현황

가. 사업명 : 2006년도 직원생일케익 구입 연간 단가계약

나. 사업비 : 연간 11,250,000원

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호 및 제30조 제2항

라. 시행계획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하고자 함.

마. 문제점 : 위 법령에 의거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에서의 제빵구입이 본 사업 외는 거의 전무하고 전자인증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연간 11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현재까지 지정정보장치에 등록된 제빵업체가 없음

|| 질 의 ||

-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의 계약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 보아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시군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여 수기에 의한 2인 이상의 견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계약의 성질상 접근성 등이 필요하나 해당업체가 없는 경우라면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계약목적 달성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기

질의와 회신

로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는 동 요령 IV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유로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8. 관할 시·군의 대상업체가 1인인 경우 지역제한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소액 수의계약 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용역, 물품 5백만원) 공사의 경우 2인이상의 견적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도록 하면서 관할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예컨데 15,000천원 공사의 경우 관할 시군에 해당면허 소지자가 1인일경우(용역인 경우 엔지니어링업체 1개업체)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중 공사 1천만원이상, 용역·물품·기타 5백만원이상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견적서를 받는 경우 접근성등을 감안하여 공사현장 또는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외의 군 제외)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하인 경우에는 또는 당해 시·군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이하인 경우에는 참가범위를 넓혀 인접 시·군, 시·도,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안내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기 전에 미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파악하여 무응찰 또는 유찰로 인한 행정력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소액수의계약 입찰대상지역 제한 관련 질의

|| 질 의 ||

- 행자부예규 187호에의하면 용역은 추정가격5백만이상 3천만원미만은 2인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된다고 되어있고 견적서 제출대상을 시군제한으로 할수있다고 합니다. 이

럴 경우 저의 지역과 인근 시·군1개 2곳만 제한해서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소액수의계약 대상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접근성, 경쟁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현장 또는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바, 참가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접 시·군을 포함하여 제한이 가능할 것입니다.

10. 용역 수의계약 관련 질의

【 질 의 】

- 경쟁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입찰참가 해야만 가능한데 우리시에 설계업체가 저회회사 1개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방법은 도내 경쟁입찰인지 아님 수의계약 방법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하여 소액수의계약 대상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서 접근성, 경쟁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대상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접근성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군, 시·도 또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11. 지방계약법 및 지자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질의 1) 2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의 경우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시

질의와 회신

관할 시·군을 포함 인접 시·군까지 3개이상 시·군으로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2) 물품구매 소액수의계약 체결시 상기 회계예규에 의하여 87.745%(1천만원 미만은 90%)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중 동 예규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기 시행령에서 명시한 고시금액미만에 해당되어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자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3) 소액견적 입찰후 낙찰자(1순위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입찰에 참가한 차순위자 순으로 1순위가 투찰한 금액이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1순위자의 투찰금액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7호, 2005.12.30)에 의하여 소액 수의계약 대상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서 접근성,경쟁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대상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접근성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군, 시,도 또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은 경쟁입찰의 경우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나 동 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7호, 2005.12.30)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질의3에 대하여)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개찰결과 1순위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차순위자순으로 1순위자 견적율(낙찰율)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할 수 있으나, 경쟁입찰인 경우 낙찰자 선언이후에는 새로운 입찰로 하여야 합니다.

1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에 관련 질의

【 질 의 】

- 축산물 계약에 있어 좋은 질과 믿을 수 있는 축협과 수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농·수·축협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하면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를 하거나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7호, 2005.12.30) IV-4에 의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2인 이상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 소액수의전자견적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질의

【 질 의 】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후 1인만이 견적을 제출한 경우 2인 이상 견적이 될 때까지 공고를 하는지 입찰과 같은 방법으로 2번 공고후 1인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계약대상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서 접근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견적서 제출대상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군, 시·도 또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회신

- 또한 재공고를 하여도 1인만이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14. 접근성의 권역별 분류 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7호(2005.12.30))에 소액 수의계약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를 하는 경우 “접근성·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현장 또는 물품·용역 등의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군의 경우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섬과 섬은 가까이는 5km, 멀리는 약150km이상 떨어져 있고 건설장비, 자재등의 운송은 배(철부도선)편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소액 수의계약 공사가 낙찰되어도 인근 섬이 아니면 직영이 불가함 이 경우 불법하도급, 부실 공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권역(인근 3~4개 읍면)별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하여야 하며 법령의 위임없이 임의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해당하는 소액수의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 2006.2.7)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 귀 질의와 같이 도서벽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참가자격을 한정하고자 한다면 동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15. 수의계약 질의

【 질 의 】

- 우리학교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못한 지역에 속해 있어 입찰시 업체가 거의 입찰에 응하지 않아 유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도 조달청을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여 견적서 공고를 하였음에도 1인만이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면 2인 이상 견적서 징구를 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소액수의계약을 2인이상 견적을 제출받도록 한 것은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액수의계약을 지역제한 할 경우에는 시·군 이외에 인접 시·군 및 시·도 등으로 제한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도로 제한하여 입찰자 및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소액수의계약시 납품소재지로 지역제한 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시·도에서 소액수의계약대상에 대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 2006.2.7)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접근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당해 시·군과 인접 시·군 또는 관할 시·도로 견적제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회신

17. 소액수의견적입찰시 지역제한 범위에 관한 질의

|| 질 의 ||

- 소액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에서 인접 시·군(예:5~10개시군) 중 일부시·군(예:1~2개시군)과 인접되지 않은 시·군(예:수십개시군) 중 일부시군(예:1~2개시군)을 임의대로 선별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접근성, 경쟁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일부 시·군 선택가능)을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는 바, 인접하지 아니한 시·군 일부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없습니다.

